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정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4.

발 의 자 : 정성국 · 김용태 · 고동진  
서천호 · 이성권 · 김 건  
김예지 · 박정하 · 김재섭  
천하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“학교”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과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(이하 “국제학교 등”이라 함)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임.

실제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기본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처럼 국제학교 등을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거나 법

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(안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등).

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”를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

나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라 설립·운영하는 국제학교

다.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)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의3. (생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 <p>&lt;신설&gt;</p> 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</u>----- -----.</p> <p>가.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2조에 따른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</u></p> <p>나. 「<u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 제223조에 따라 <u>설립·운영하는 국제학교</u></p> <p>다. 「<u>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</u></p>

